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962
----------	------

제출일자 : 2021. 6. 10

제 출 자 : 달성군



1. 제안(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청년 친화적 기업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소재 기업의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의 감감을 통해 지역 내 청년일자리 창출과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관계법령에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의 감경 범위를 확대함(안 제32조)
- 나.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의 납부방법을 개선함(안 제34조, 제35조)
- 다.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 중 생략 항목을 추가함(안 제5조)
 - 다른 법률에 따라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용도 변경·폐지
- 라. 상위법령 및 개별법령의 규정에 맞도록 조문 정비
 - 불명확한 내용 삭제 및 상위 주요법령 추가(안 제5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라 “농업인”의 정의 규정(안 제28조)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의 정의 규정(안 제30조, 제66조)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신설조문 제13조의2 반영(안 제32조)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별법령의 명칭 변경에 따라 법률명 변경(안 제32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2) 「농업·농촌 식품산업 기본법」
- (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4) 「외국인투자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다. 기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 (2) 입법예고(2021. 5. 6.~5. 26.)결과 : 의견 없음
-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5)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 (6) 부서합의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하고, “군유재산관리처분”을 “군유재산 관리 및 처분”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7. 법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제5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제8조제1항 중 “따른”을 “따라”로 하고, “대부재산관리 운영”을 “재산 관리 및 운영”으로 하며, 같은 조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11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을 “군수는”으로 한다.

제22조제5항 중 “수입을 배분할”을 “수입을 관리수탁자에게 배분할”로 한다.

제22조제6항 중 “지방자치단체에서”를 “군이”로 한다.

제25조의2 제목 중 “대부”를 “대부 및 사용·수익 허가”로 하고, 같은 조 중 “제29조제1항제12호”를 “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29조제1항제12호”로 하며, “대부”를 “대부 및 사용·수익 허가”로 한다.

제28조제5항제1호 중 “실경작자”를 “농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매각대금”을 “2인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하고,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를 제외한 본문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9항”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로 한다.

제32조제2항 각 호를 제외한 본문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3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생산·연구시설에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30퍼센트로 한다.

1.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용으로 설치되고 사용되는 생산시설

2. 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조사·연구·시험 등을 위하여 설치되고 사용되는 연구시설

제32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영 제17조제7항 및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료와 일반재산의 대부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7조제6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50
2. 영 제35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대부료의 100분의 50
3. 영 제17조제6항제3호에 또는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사용·수익 또는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등의 100분의 100

제34조의 제목 “대부료등에 관한 특례”를 “사용료 및 대부료의 조정”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를 제외한 본문 중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를 “그 전부를 감액 조정할 수 있다.”로 한다.

제35조제2항제2호 중 “3회”를 “4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4회”를 “6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38조제2항제2호 중 “시가”를 “균이”로 한다.

제66조 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 및 사용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시행
일 이후 대부료 및 사용료를 납부고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부료등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
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4조에 따라 재산소재지 읍·면장에게 <u>군유재산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u>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 <u>군유재산 관리 및 처분</u> ----- -----.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생략) 1. ~ 3. (생략) 4. <u>일반재산의 용도변경</u> 5. (생략) 6. <u>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u><신 설></u> <u>기존 제6호에서 이동</u> ② (생략) 1. ~ 4. (생략)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u><삭 제></u> 5. (현행과 같음) 6. <u>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u> 7. <u>법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u> 8. <u>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②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
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
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생략)

1. ~ 7. (생략)

③ (생략)

1. ~ 5. (생략)

<신 설>

④ (생략)

제11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
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
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
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② (생략)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처분이 의무
화된 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
는 용도폐지

제8조(실태조사) ① -----
----- 따라 -----

----- 재산 관리
및 운영-----.

② (현행과 같음)

1. ~ 7.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군수는 -----

-----.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 ④ (생략)

⑤ 일반입찰에 의하여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 제6항 및 영 제21조에 따라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
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⑥ 제1항에서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년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한다.

제25조의2(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 군수는 영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달성군지역(이하 “지역”이라 한다)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28조(대부료의 요율)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수입을 관리수탁자에게 배분할
-----.

⑥ -----

----- 군이 -----
-----.

제25조의2(수의계약으로 대부 및 사용·수익 허가할 수 있는 경우)
----- 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29조제1항제12호-----

대부 및 사용·수익 허가-----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③ (생략)

1. ~ 3. (생략)

④ ~ ⑤ (생략)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제30조(토석채취료 등) ① 제28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 대하여는 사용료·대부료 외에 토석채취료를 징수하되 토석의 매각대금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이상으로 산정하며, 기타 토석의 매각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은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② ~ ⑤ (생략)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9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

① ~ ③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④ ~ ⑤ (현행과 같음)

1. ----- 농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제30조(토석채취료 등) ① -----

2인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 -----
----- 그 밖에 -----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 -----

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3. (생략)

②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략)

③ 영 제30조제3항의 생산·연구시설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 허가 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30퍼센트로 한다.

<신 설>

<신 설>

-----.

1. ~ 3. (현행과 같음)

②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

-----.

1. ~ 2.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생산·연구시설에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30퍼센트로 한다.

1.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용으로 설치되고 사용되는 생산시설

2. 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조사·연구·시험 등을 위하여

④ ~ ⑤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34조(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중 전년도 사용료 또는 대부료보다 100분의 5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1. ~ 3. (생략)

설치되고 사용되는 연구시설

④ ~ ⑤ (현행과 같음)

⑥ 영 제17조제7항 및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료와 일반재산의 대부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7조제6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50

2. 영 제35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대부료의 100분의 50

3. 영 제17조제6항제3호에 또는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사용·수익 또는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등의 100분의 100

제34조(사용료 및 대부료의 조정) -

----- 그 전부를 감액조정할 수 있다.

1. ~ 3. (현행과 같음)

제35조(대부료등의 납기)

① ~ ② (생략)

1. (생략)

2. 200만원 초과 : 6월 이내 3회
분납

3. 300만원 초과 : 9월 이내 4회
분납

③ (생략)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에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
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
예 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① (생략)

1. ~ 5. (생략)

② (생략)

1. (생략)

2. 군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시가 계속하여 점
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
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

제35조(대부료등의 납기)

① ~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4회

3. ----- 6회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①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 군이 -----

3. ~ 5.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필) -----

-----감정평가
법인등-----.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议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 “공유재산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2.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

제12조(회계 간의 재산 이관) 지방자치단체의 각 회계 중 어느 하나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회계의 재산으로 이관할 때에는 유상(有償)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관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0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3.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운영 및 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제34조(대부료의 감면)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대부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익(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 7. (생략)
 8.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9. ~ 20. (생략)
 2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2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이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23.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서 청년 친화적 근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업이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제14조(사용료)

- ⑦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 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6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 해당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사용료는 1년(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 남은 사용·수익허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남은 사용·수익허가기간)의 범위에서 미루어 내게 할 수 있다.

제16조(사용료의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 사용료(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를 감경받거나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사용료를 말한다)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제17조(사용료 감면)

- ⑥ 법 제24조제2항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1. 제13조제3항제8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한 경우
 - 2. 제13조제3항제21호·제22호 또는 제23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한 경우
 -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다만, 법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허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한 경우
-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1. 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
2. 제6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3. 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0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①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12.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13. ~ 18. (생략)
19.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10명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이 경우 대부 대상자의 세부 선정기준, 선정절차와 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가. 공장 또는 연구시설과 그 지원시설
- 나.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시설 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시설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일자리창출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시설
- 다.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20.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대부하는 경우
- 21.~ 24. (생략)
25.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제13조제3항 제22호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에 대부하는 경우
26.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서 청년 친화적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업에 대부하는 경우

제32조(대부료의 납부기한)

- ②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6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 해당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대부료는 1년(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 남은 대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남은 대부기간)의 범위에서 미루어 내게 할 수 있다

제34조(대부료의 조정) 법 제33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 연간 대부료(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대부료를 감경받거나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대부료를 말한다)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제35조(대부료의 감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로서 법 제31조제4항제2호에 따라 대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대부료를 감면하지 않는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의 100분의 10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 가. 제29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한 경우
 - 나. 제29조제1항제20호·제25호 또는 제26호에 해당하여 수익계약으로 대부한 경우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일반재산을 대부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

□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감정평가법인등”이란 제21조에 따라 신고를 한 감정평가사와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국유·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24조·제32조 및

제3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국유·공유재산의 임대 등)

⑫ 제10항 및 제1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대상 사업 및 임대료의 감면을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창출, 기술이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에 미치는 영향 등 외국인투자가 가져오는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다.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 이전공공기관, 제47조의3에 따른 발전 지원센터, 그 밖에 혁신도시 내 입주하는 기업·대학·연구소 등에 대하여 국·공유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 및 이전공공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의 국유지에 대한 사용허가나 공유지에 대한 사용·수익의 허가 또는 대부(貸付)를 받은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국·공유지를 매입 또는 원상회복하거나 축조한 시설물을 기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국·공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④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기준 및 요건, 감면을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창출, 혁신도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